

# 국제환경규제동향과 산업환경정책방향

이 자료는 지난 5월 3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주최의 「자동차 환경정책」세미나에서 「국제환경규제동향과 자동차산업정책방향」 제목으로 발표된 내용 중 발췌한 것이다. <편집자註>

신 동 식  
〈통상산업부 산업환경과 과장〉

## I. 최근 국제환경규제 동향

### 1. 국제협약 및 개별국가의 환경규제

-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, 오존층파괴, 폐기물증가 등 지구전체의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체결이 확대
  - 몬트리올의정서 : 프레온가스(CFC), 할론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규제 → 새로운 대체물질개발 강요
  - 바젤협약 : 유해적 특성을 가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 →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자원의 수급에 차질
  - 기후변화협약 : 에너지사용억제등을 통해 이산화탄소(CO<sub>2</sub>)등 온실가스의 배출규제 → 화석연료의

- 준비중이 큰 산업(철강, 시멘트등)에 대한 에너지저감형 공정 또는 기술개발 강요
- 이러한 국제협약과는 별도로 선진국에서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조치의 입법화 증가 추세
  - 미 국 : 대기정화법을 개정하여 자동차 배기가스의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, 무공해자동차의 2% 의무판매 비율을 '98년부터 실시 → 무공해 전기자동차 개발불가시 자동차 대미수출 불가
  - 독 일 : 포장재를 생산자가 직접 수거토록 하는 "포장재쓰레기규제법"을 제정 → 폐가전제품 및 폐자동차에 까지 확대 예정
  - 북유럽 : 에너지/탄소세를 부과하여 CO<sub>2</sub> 배출량 감축 유도
- '92년 리우회의후 설치된 UN 지속개발위원회에 국가전체의 환경개선 노력을 알릴 의무가 있고 『상공계의 역할』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활동 전개

## 2.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기구 동향

### 가. WTO

- WTO내에 환경무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무역과 환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.

〈주요논의과제〉

- 다자무역체제조항과 환경목적을 위한 무역조치(다자환경협정상의 조치포함)와의 관계
- 다자무역체제조항과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환경조치(환경정책 포함)와의 관계
- 다자무역체제조항과 다음 2가지와의 관계
  - ① 환경목적을 위한 부과금 및 조세
  - ② 환경목적을 위한제품요구사항(표준·기술 규정, 포장, 라벨링, 재활용 등)
- 무역조치와 환경조치(제품요구사항 포함)의 투명성에 대한 다자무역체제조항
- 다자무역체제의 분쟁해결절차와 다자환경협정상의 체계의 분쟁해결절차와의 관계
- 개도국(특히 최빈개도국)과 관련하여, 환경조치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

- 국내금지상품의 수출문제

### 나. OECD

- '96년 가입예정인 OECD에서는 상품자체에 대한 규제에서 생산공정에 대한 규제에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.
- '93년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환경관련 10개 항목에 대한 분석작업을 하도록 결정되어, 이 중 공정 및 생산방식(PPMs), 환경기준의 국제적조화, 경제적수단, 환경보조금 및 무역등에 우선 순위를 두어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

〈10개 분석직업대상〉

- 공정 및 생산방식(PPMs)
- 환경목적을 위한 무역조치의 사용
- Life Cycle 관리 및 무역개념
- 환경기준이 국제적 조화

- 경제적 수단, 환경보조금 및 무역
- 무역과 환경정책 및 협정의 검토
- 무역과 환경정책의 원칙과 개념
-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
- 환경정책, 투자 및 무역
- 분쟁해결

### 다. ISO

- '93. 6월 국제표준화기구(ISO)는 각국마다 상이한 환경관리기법과 관리체제의 표준화를 위하여 ISO내에 기술위원회 TC 207를 설치, '98년 시행을 목표로 국제환경경영표준화규격(ISO 14000)을 마련중임.

〈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 것〉

- 환경경영체제(EMS :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) : '95년 완료 예정
- 환경감사(EA : Environment Auditing) : '95년 완료예정
- 환경활동실적평가(EPE : Environment Performance Evaluation) : '96~'97년 완료 예정

〈제품의 환경적합성 판단에 관한 것〉

- 환경표지(EL : Environmental Labelling) : '95~'96년 완료 예정
- 제품수명주기평가(LCA : Life Cycle Assessment) : '97년 완료 예정

〈용어정의 분야〉 : '95년 완료 예정

## II. 우리 산업계의 환경문제 대응실태

### 1. 국내환경규제 동향

- '90년 이후 국내환경규제가 세분화·복잡화되고 기준도 대폭 강화
- '90~'94년간 대기·수질·소음·진동·유해화학물 규제등 12개의 법률이 새로이 제정시행 됨.
- 대기부문의 경우, 배출허용기준을 3단계('94.

12이전, '95~'98, '99. 1이후)로 나누어 강화될 계획

-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기준을 '96. 1부터 미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강화

-수질부문의 경우, 배출허용기준을 2단계('95. 12이전, '96. 1이후)로 나누어 강화할 계획

○환경개선에 대한 국민관심증대로 감시·감독위주의 민간단체설립이 급증하고 기업에 대한 환경개선요구 급증

○소비자의 행태도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선호하는 추세로 급속히 변화

○'93년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 소비자의 69%가 상품가격이 다소 인상되더라도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선택하겠다고 응답

○쓰레기 종량제, 환경마크제 실시 등의 영향으로 환경친화성 상품선택 가속화

## 2. 산업계의 환경문제 대응실태

### 가. 산업계 전반

○철강, 비철금속, 석유화학, 시멘트, 제지 등 환경부하가 크고 에너지다소비적인 업종의 비중 및 설비투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

-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시급

○산업별 에너지소비구조가 낭비적이고, 청정기술개발을 통한 공정개선등이 부진한 상태

○우리나라의 제조업분야 공해방지 투자비율은 약 2%이나, 선진국의 4~5%의 수준에 비하면 크게 낮은 상태로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가 미흡

-환경설비투자의 대부분이 오염물질처리설비 위주이고, 청정생산설비 비중이 매우 낮음

-설비투자의 대부분이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이고, 민간의 환경설비투자는 극히 저조한 실정

○국내의 환경시장 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나, 국내환경산업은 크게 낙후

-2000년 세계환경설비시장 규모는 약 3,000억 \$, 국내시장은 약 63억 \$로 예상

○발생오염물질의 사후처리기술은 선진국의 60% 정도 수준이나 오염물질의 발생 저감·저공해공정·무공해제품개발등 청정기술은 크게 낙후

### 나. 자동차 산업계

○'90. 11월 미국은 대기공해 기본법인 대기정화법(Clean Air Act)을 2단계로 강화

-1단계('94년부터) : HC30%삭감, Nox60%삭감, 보정거리 5년/5만마일→10년/10만마일로 연장

-2단계(2004년 이후) : 제1단계 배출가스 기준치의 절반수준으로 삭감

○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치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 CARB(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)는 '98년에 California 전체 판매 자동차의 2%를 무공해차량과 48%의 LEV(Low Emission Vehicle)를 판매토록 규정

-2003년에는 무공해차량이 10%로 증가될 전망으로 저공해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개발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

○자동차산업계와 정부는 주요자동차 수출국인 미국의 환경기준 강화에 대응하고 자동차산업의 기술능력을 제고하기 위해, G7 Project로 차세대 자동차기술개발 사업을 추진중

-'92~2001(10년) 동안 4,500억원(정부 2,200, 민간 2,300)의 기술개발비 투자

-'95년에는 저공해 자동차기술개발 67.2억원,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50억원이 각각 지원될

### 제조업 평균 에너지원단위 비교

(단위 : TOE/백만원)

한	국	일	본
1985	1993	1985	1993
0.673	0.827	0.301	0.244

\* '85년 불변가격기준

계획

- 또한 환경기술개발을 위해 통상산업부는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, 공업발전기금, 에너지·자원특별회계를 지원하고 있음('95년 약 115억원 계획)
- 자동차부품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

### Ⅲ. 통상산업부의 산업환경정책 방향

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환경보전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, 주요 업종별『산업환경비전』을 수립하고, (가칭)『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』의 제정을 추진키로 함.

#### 1. 『산업환경비전』의 수립

- 『산업환경비전』은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문제에 대한 수동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자발적, 적극적인 환경배려 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, 산업별로 원료조달에서 부터 제조, 유통, 사용, 폐기에 이르는 산업활동의 각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업종별로 환경관련 추진과제 및 방향을 종합적, 체계적으로 제시할 계획임.
- '95년 상반기중에 업종별 관련단체, 산업연구원, 생산기술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10개업종(철강, 시멘트, 비철금속, 제지, 염색, 피혁, 자동차, 주단조, 가전제품, 화학)에 대한『산업환경비전』 마련 예정
- 이러한 종합적인 환경비전에 따라 개별기업은 환경전략을 수립, 추진토록 하고 통상산업부에서는 개별업체 단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청정제조기술개발

발등과 같은 분야에 대하여 산업계, 연구기관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며,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제도, 금융, 세제등의 지원책도 마련하여 기업의 환경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

#### 2. (가칭)『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』의 제정

##### 가. 제정 필요성

-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환경을 개선하며, 우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
-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,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함.
- 현재 산업, 환경, 에너지와 관련된 관계법령등이 다수 있으나, 산업발전, 환경보전, 에너지이용합리화등 개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목적에 국한되고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 지원하는 추진 체제는 미비
- 따라서,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전환촉진을 위한 제반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법령의 제정이 필요

##### 나. 법안의 기본방향

-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개편지연시 2000년대 선진한국 실현은 불가능→종합적인 추진체제를 조기구축
- WTO하에서도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지원은 일정조건하에서 허용보조금→단기간내에 환경설비 투자 및 기술개발등에 집중적인 지원
- 정부주도의 환경규제에만 의존한 환경개선은 한계가 있으므로,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확대되도록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에 대한 적

절한 유인 및 지원 강화

- 개별기업별 대응은 환경문제가 안고 있는 종합성·공공성·전문기술적 추세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, 기업의 공동대응과 산, 학, 연의 종합지원 체제구축

다. 법률안의 주요내용

(1)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

(가) 산업구조 전환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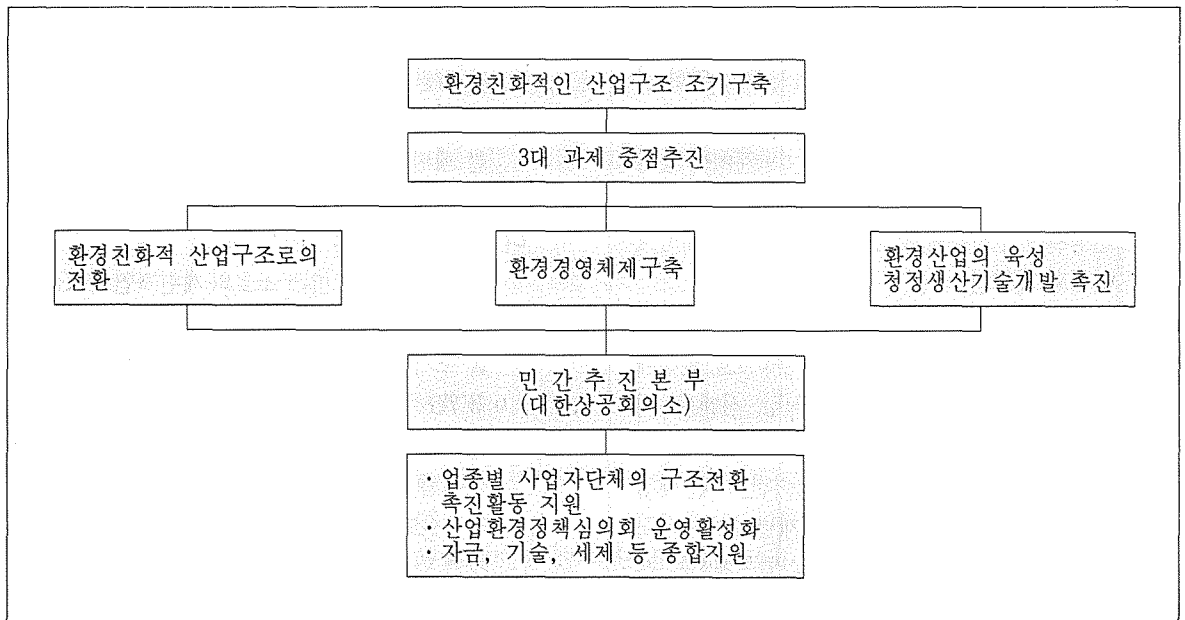
- 통상산업부장관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5년 단위의 종합시책을 수립, 고시
- 기본계획 달성을 위하여 업종별 주요지표를 발굴하여 목표 제시
- 바람직한 목표설정과 이의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

(나) 구조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환경실천계획 수립, 추진

-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주요과제

를 선정

- 환경친화적인 공정 및 생산구조로의 전환, 온실가스저감형 산업구조로의 전환, 환경친화적인 산업활동촉진, 환경경영 인증제도 실시, 환경산업육성
- 업종별, 품목별 사업자단체는 구조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친화적 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환경 실천계획을 수립
  - 원료조달단계에서의 환경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원료 및 연료조달방안, 재생자원 활용도 제고, 재생자원이용상품 개발
  -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저감방안, 오염물질제거 및 감축방안, 부산물유효이용방안, 용수재이용 확대방안 등 생산공정개선
  - 유통·공급단계에서의 포장 및 불류합



리화

-폐기단계에서의 폐기물감량화, 자원재  
활용 확대방안

-환경친화적인 제품개발등 대체상품개발  
계획

- 업종별 산업환경실천계획에 따라 업계는  
자체적으로 실천가능한 과제는 스스로 추  
진하고,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지원 요청  
-업종별 사업자단체의 지원과제 선정협  
의회에서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통상산  
업부장관에게 요청

(다) 구조전환 촉진을 위한 자금 및  
세제지원

자금지원 (용자)

- 업종별·품목별 환경친화도, 에너지소비수  
준, 공업용수 사용수준, 부가가치율 등을  
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개선 및 개체, 신  
·증설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시 효율성이  
높은 분야에 우선 지원

기술개발자금지원 (출연)

- 산업구조전환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과 산업  
환경실천계획에 의거 선정된 기술개발 과  
제에 대하여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, 소  
요되는 자금은 통상산업부가 출연

세제지원

-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 범위확대  
- (현행) 공해방지시설 → (개선) 공정개선  
및 개체, 청정생산시설 등
- 관세감면 대상확대  
- (현행) 공해방지시설 (완제품위주) → (개  
선) 부품 및 기자재까지 확대

- 환경설비 및 기술에 대한 투자지출은 자산  
적 성격보다는 비용지출 성격이 강하므로,  
법인세 및 소득세의 세액공제 한도 확대 또  
는 종합한도제의 예외 인정 검토

산업구조전환 촉진을 위한  
종합시책과 산업환경실천계  
획을 수행하는 공공단체,  
사업자단체, 연구소등에  
필요한 최소경비 보조

- 산업구조 전환촉진 종합시책 수립을 위한  
연구사업
- 산업환경 실천계획 작성을 위한 사업
- 외국환경산업계와의 국제협력사업
- 환경경영인증제도 도입시행을 위한 사업
- 민간추진대책본부의 교육·홍보등을 위한  
주요경비

(2)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 
민간의 자발적 추진체계 구축

(가) 『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』설치  
운영

- '92. 6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『21세기 지구  
환경실천강령(Agenda 21)』의 내용중 상공  
계의 역할(제30장)을 실천하기 위한 체제구  
축

-청정생산기술 및 공정개선, 폐기물발생 최  
소화 노력 강화

-책임있는 기업이 정신으로 상공계 역할 실  
천에 동참하는 기업수를 증대

- 대한상공회의소내에 『환경친화적 산업구조  
전환 촉진을 실천하기 위한 대책본부』를 설  
치 운영

(나)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산업구조전환 촉진을  
위한 기능활성화

- 업종별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산업환경 실  
천계획 작성

- 우수사례 발굴 홍보등 추진분위기 확산유도
- (다) 지역별, 공단별 산업환경실천협의회 구성 운영
  - 지방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업계, 학계, 연구소, 중소기업지원기관등과 협조하여 지역별, 공단별 협의회 구성 운영
    - 정보교류 촉진과 공동추진과제 발굴등
- (라)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지도강화
  - 중소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협동조합, 상공회의소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도 강화
- (3) 환경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지원
  - (가) 환경산업육성
    - 환경산업육성대책 수립 시행
      - 환경설비산업육성을 위한 설비기술개발지원, 품질인증제실시
      - 설계, 감리 등 엔지니어링 부문에 대한 육성방안 수립
      - 공공분야의 환경설비공사에 대한 발주제도개선(콘크리트 형태 또는 건설공사와 분리발주)
      - 환경컨설팅등 신규분야에 대한 지원방안
    - 환경설비 공제사업 실시
      - 개발된 환경설비기술의 실용화에 따른 기업의 초기 위험부담을 줄이고 품질 및 하자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실시
  - (나) 청정생산기술지원
    - 청정생산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중 청정생산기술개발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기술지원을 강화
  - (다)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
    - 외국의 환경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와의 국제교류, 세미나, 국제기술시장 설치 운영
    - 미국, 독일 등 국제환경산업 전문전시회 참

- 가지원
- (4) 환경경영인증제도 도입 시행
  -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도입확산을 위하여 환경경영에 관한 규격(한국환경경영규격)을 공업진흥청이 제정
  - 공업진흥청장이 환경경영에 관한 인증기관을 지정
    -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공업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.
    -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
- (5) 산업환경정책심의회 설치운영
  - 구조전환촉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산업환경정책심의회를 설치운영
    - 〈심의회의 기능〉
    - 종합시책 심의
    - 산업환경 실천계획의 지원과제 심의
    - 환경산업, 청정생산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사업 심의
    - 국제환경규제 움직임에 대한 산업계대책 심의
- (6) 환경산업협회 설립
  -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환경산업협회를 설립
    - 〈협회 주요사업〉
    - 환경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
    - 외국의 환경산업계와의 국제협력사업
    - 환경산업의 구조고도화, 생산성향상 등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
    - 환경설비 공제사업의 운영
    - 환경산업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등의 활동
    - 환경산업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●